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5건)

거창군

--- 목 차 ---

의안번호	조 례 명	쪽수
2025-17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략담당관)	1
2025-18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행정과)	9
2025-19	사파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관광진흥과)	15
2025-20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19
2025-21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	25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17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정비한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경남별장을 운영하고 관광객과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남별장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빈집 활용의 용도에 경남별장을 추가함(안 제8조)

다. 경남별장 설치, 이용료 등을 신설함(안 제9조, 별표 1, 별표 2)

1) 설치·운영, 위탁

2) 이용료, 면제, 반환 기준, 이용제한

3) 프로그램 체험비 등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17조·제156조·제161조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100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1. 17.~2.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남별장”이란 활용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생활)으로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남별장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숙박시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경남별장 설치 등) ① 군수는 관광객 등에게 숙박 제공을 위해 경남 별장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경남별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경남별장 이용료 및 면제 기준은 별표 1,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이나 안전 등을 위해 경남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경남별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4.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u><신 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4.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u>경남별장</u>”이란 활용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생활)으로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제8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공용지 등 주민복지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제8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공용지 등 주민복지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 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 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경남별장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숙박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경남별장 설치 등) ① 군수는 관광객 등에게 숙박 제공을 위해 경남별장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경남별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경남별장 이용료 및 면제 기준은 별표 1,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이나 안전 등을 위해 경남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경남별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

경남별장 이용료 및 면제 기준(제9조 관련)

1. 이용료

시설	1박	1주	기준인원	비고
1동~ 3동	15만원	50만원	4명	가. 기준인원 초과 시 초과 1명당 1만원 추가 나. 1박은 그날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사용하는 것을 말함 다. 한 달 살기나 1년 살기 대상자는 관리(전기·수도·가스 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자부담 조건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

2. 이용료 면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5세 이하 아동

나. 군이 주최·주관하는 교육·행사·축제에 초청받는 사람 등이 이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경남별장 활성화를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별표 2]

경남별장 이용료 반환 기준(제9조 관련)

기준	반환 내용
1. 이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2.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이용 예정일 예정시간 이전 취소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이용 예정일 예정시간 이후 취소	반환 없음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
6. 군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및 위약금

비고: 제6호의 위약금 기준 및 그 밖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함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경남별장 운영 및 위탁

나. 관련 조문: 경남별장 설치 등(안 제9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100	100			
도비	50	50	-	-	-
군비	50	50	-	-	-

3. 경남별장 조성비

가. 2024년 예산 1,000백만원

나. 도비(지방소멸대응기금) 500백만원, 군비 500백만원

4. 비용추계 요약

가. 2025년 민간위탁금 100백만원

나.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작성자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5-1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의 기준,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을 정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우호 증진 및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무를 정함(안 제1조~4조)
- 나. 자매결연등 및 기준, 절차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다. 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 문화·관광시설의 감면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라. 해지를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80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2. 27.~2025. 1. 1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입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교류의사를 바탕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하며 앞으로 자매결연을 지향하는 교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자매결연등 및 기준) 군수는 교류협력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교류를 위한 협약(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하여 교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
5.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제6조(자매결연등의 절차 등) ① 자매결연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한다.

② 자매결연등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 분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자매결연등의 모든 절차와 협약서의 내용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은 호혜주의에 따라 군수와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교류협력 활성화 및 우호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간 교류협력
4.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5. 군 우수정책의 홍보 및 공유
6.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문화·관광시설의 감면) 군수는 자매결연등을 한 도시의 주민이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관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군민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제9조(자매결연등의 해지) 군수는 자매결연등을 한 도시와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등이 유명무실한 경우 자매결연등을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자매결연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나. 관련 조문: 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군비	80	80	80	80	80	400

3. 비용추계 상세내역

가. 국내 자매·우호 도시 교류행사 등: 36백만원

나. 국외 국제교류 행사: 33백만원

다. 국제교류도시 연수공무원 초청: 11백만원

작성자 행정과장 윤 광 식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5-19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군을 찾는 방문객이 거창군 곳곳을 둘러보고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과테마파크 등 시설의 휴무일을 조정하여 주중 관광객의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공공시설 휴무일 일괄 조정(안 제1조·제2조)

1) 조례 2건

가)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휴무일 변경: 월요일 ⇒ 수요일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합의 완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1. 22.~2. 1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월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제2조(「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거창군 거창천적
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월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사과테마파크·거창천적생태과학관 휴무일 변경

나. 관련 조문: 안 제1조·제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가. 2025년 예산 약 5백만원 미만 소요 예상

- 1) 시설별 안내판 등의 변경
- 2) 휴무일 변경 홍보 현수막 게첨 등

작성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2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의 시설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교육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 전체를 포함하는 제명으로 변경함

1) 위임사무: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2) 자치사무: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나.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시설 이용료 등을 신설함(안 제8조·별표)

1) 이용료, 면제 및 반환 기준

2) 이용 제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61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1. 17.~2.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환경교육센터의 시설 이용료, 이용료의 면제 및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⑤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u>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u>군수</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는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지원대상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3.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4. 그 밖에 하천환경,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u>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u>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u>군수</u>는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지원대상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3.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4. 그 밖에 하천환경,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u><신 설></u>	④ 환경교육센터의 시설 이용료, 이용료의 면제 및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u><신 설></u>	⑤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시설 이용료, 면제 및 반환 기준(제8조제4항 관련)

1. 시설 이용료

시설	이용료		비고
	평일	토요일 · 공휴일	
교육장, 영상 교육장	40,000원	20 퍼센트 가산	1. 시설 이용 시간 가. 기본 2시간 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2. 추가 요금 가. 1시간 초과 시 10,000원 나. 냉난방 등 전기 사용: 10,000원 3.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
야외 공연장	50,000원		

2. 이용료 면제

면제 대상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 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4. 그 밖에 하천환경, 주민복지 등을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이용료 반환

유형	반환 기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거창군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가.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나.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다.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	가. 이용료 전액 반환 나.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총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총이용료의 20퍼센트 배상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가.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 취소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된 경우 나.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이후에 이용 취소한 경우	가. 이용료 전액 반환 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한 금액

비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2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에서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위임되어 정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에서 농막을 삭제함
(안 제26조제2항)

- 1) 이유: 농막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임시창고로 규정됨
- 2) 근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의 연장 횟수를 신설함(안 제2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 2)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1. 21.~2.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5조제7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별 준치기간의 연장 횟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6호·제7호·제8호·제14호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횟수 제한 없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횟수 제한 없음

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제1호의2에 따른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

나. 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을 것 2.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을 것 2.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삭 제>

<u><신 설></u>	③ 영 제15조제7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의 연장 횟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6호·제7호·제8호·제14호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횟수 제한 없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횟수 제한 없음 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제1호의2에 따른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나. 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